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 검 토 보 고

## I. 제 안 경 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나. 의안번호 : 제1180호

다. 제출일자 : 2016. 5. 10

라. 회부일자 : 2016. 5. 13

## II.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5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Ⅲ. 2015 회계연도 결산 총괄

####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실제 수납액)	4,116억 5백만원
- 일반회계	1,865억 7백만원
- 특별회계	2,250억 9천8백만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250억 9천8백만원

2. 세출예산(예산현액)	5,396억 1천8백만원
- 일반회계	2,762억 1천8백만원
- 특별회계	2,634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634억원
(※참고, 세출예산현액 = 예산액+전년도이월액+예비비+이·전용액)	

#### 나. 기금

(단위 : 백만원)

종류별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2015년도말 조성액 (A+B)	
			계 (B)=(C-D)	수납액(C)		지출액(D)
기 후 변 화 기 금		51,645	△3,905	17,608	21,513	47,740
자원회수 수설역 주변지역 지원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계정	30,582	3,096	22,445	19,349	33,678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10,000	△9,903	4,097	14,000	97

## IV.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 가. 일반회계

#### 1. 세입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일반회계	147,608	191,649	186,507	5,142	-	5,142
세외수입	88,624	136,362	131,330	5,032	-	5,032
경상적세외수입	87,304	84,289	83,549	740	-	740
임시적세외수입	1,320	52,073	47,780	4,292	-	4,292
보조금(국고보조금)	52,970	48,536	48,536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014	6,751	6,641	110	-	110

(※ 결산서 p.21-22)

- 2015회계연도 세입은 총 1,916억 4천9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65억 7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1억 4천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자원회수시설 운영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차량정비사업소 사업수입 등이고,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등임.

실제 수납액 구성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35억 4천9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477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이 485억 3천6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66억 4천1백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 : 835억 4천9백만원

- 재산임대수입 3억 1천3백만원
- 사용료 수입(차량장비센터 자동차 검사장 및 정비고 사용료 등) 2억 6천9백만원
- 수수료수입(수입증지 수입) 1백만원
- 사업수입(자원회수시설운영수입 등) 631억 5천만원
- 징수교부금 수입(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96억 1천9백만원
- 이자수입(천연가스자동차 융자금 이자수입 등) 1억 9천7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 477억 8천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1억 3천1백만원
- 기타수입(불용품 매각대금, 시도반환금, 그외수입) 472억 9천3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양천구청 폐기물반입 수수료 등) 3억 5천6백만원

○ 보조금 : 485억 3천6백만원

- 국고보조금 485억 3천6백만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66억 4천1백만원

- 전년도이월금(국고보조금 사용잔액등) 14억 5천4백만원
- 융자금 원금수입(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1억 8천7백만원

2. 세출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이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256,877	19,341	-	△425 425	-	△2,230 2,230	276,218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76,218	252,595	223,977	31,596	20,645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5년도 예산액 2,568억 7천7백만원, 전년도이월액 193억 4천1백만원을 합하여 총 2,762억 1천8백만원임.

예산집행은 2,525억 9천5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39억 7천 7백만원을 지출하고, 315억 9천6백만원(명시이월 29억 3천만원+사고이월 286억 6천6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전용<sup>1)</sup>: 총 6건, 4억 2천5백만원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1백만원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1억원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2건)	1억 2천4백만원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1억원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1억원

○ 이체: 총 37건, 93억 3천9백만원

○ 변경사용: 총 1건, 22억 3천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22억 3천만원

1)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

○ 명사이월: 총 3건, 29억 3천만원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2억원
-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도입 19억원
-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8억 3천만원

○ 사고이월: 총 15건, 286억 6천6백만원

- 공공기관 LED 조명보급사업(시설비) 5억원
- 취약계층 LED 조명보급사업(시설비) 2억 7천3백만원
- 서울형 GT 육성을 위한 R&D 지원(연구용역비) 1억 9천5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민간경상사업보조) 10억 8천3백만원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15억 2천8백만원
- 그린카 보급(민간자본사업보조) 99억 8천8백만원
-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민간자본사업보조) 30억 7천2백만원
-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방안 연구(연구용역비) 4억 4천8백만원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시설비, 감리비) 26억 2천4백만원
- 재활용률 향상(사무관리비) 1천9백만원
-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시설비, 감리비) 85억 2천8백만원
- 보라매공원 광역적환장 타당성 조사(시설비) 4천3백만원
-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시설비) 3억 6천5백만원

○ 불용액: 206억 4천5백만원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5%인 206억 4천5백만원임.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9억 1천2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152억 6천8백만원
-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6천5백만원

○ 예비비 지출: 해당사항 없음

## 나. 특별회계

### 1. 세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
계	263,400	233,547	225,098	8,449	-	8,449
세외수입	250,219	170,071	161,622	8,449	-	8,449
경상적 세외수입	249,365	166,020	157,610	8,410	-	8,410
임시적 세외수입	854	4,051	4,012	39	-	39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181	63,476	63,476	-	-	-

(※ 결산서 p.45-46)

#### ○ 경상적 세외수입 : 1,576억 1천만원

- 사용료 수입(기타사용료<sup>2)</sup>) 1,251억 9백만원
- 사업수입(사업장생산수입<sup>3)</sup>, 분담금수입) 325억 1백만원

#### ○ 임시적 세외수입 : 40억 1천2백만원

- 기타수입 38억 5천3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1억 5천9백만원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634억 7천6백만원

- 보전수입 등 16억 9천5백만원
- 내부거래(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617억 8천1백만원

2) 집단에너지열 판매수입

3) 전기판매수입

## 2. 세 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이 년 월 도 액	예 비 비	전 용	이 용	예산현액
계	263,400	-	-	Δ 200 200	- -	263,400
집단에너지공급 사업특별회계	263,400	-	-	Δ 200 200	- -	263,400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금액	비율(%)
계	263,400	214,852	214,673	179	48,548	18.4
집단에너지공급 사업특별회계	263,400	214,852	214,673	179	48,548	18.4

(※결산서 p.123-125)

○ 이체, 변경사용, 명시이월 : 해당사항 없음

○ 전용: 1건, 2억원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민간위탁금→연구용역비) 2억원

○ 집행잔액: 485억 4천8백만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634억원의 18.4%인 485억 4천8백만원임.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3억 1천6백만원

- 예산집행 잔액(낙찰차액 등) 330억 3천8백만원

- 예비비 31억 9천4백만원

○ 예비비 지출: 해당사항 없음



## VI. 기 금 결 산

### 가. 기후변화기금

- 본 기금은 1992년도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가스공급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8년 1월부터 기후변화기금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음.
- 기후변화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516억 4천5백만원에서 2015년도는 조성액 176억 8백만원, 사용액 215억 1천3백만원으로 39억 5백만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477억 4천만원임.

#### 1.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2015년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51,645	△3,905	17,608	21,513	47,740

2015년도말 조성액 = 시금고 예치금(14,240백만원) + 다음년도 이월액(100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33,400백만원)

#### 2. 2015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보조 금 <sup>4)</sup>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공유목적 사업비	융자금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	39,353	15	12,912	21,745	1,203	3,478	39,253	6,975	14,534	4	14,240	3,500	100

4) 국고보조금(산림청) 1,500만원을 기금수입계획에 반영한 것임

### 3. 기후변화기금 사업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계획(A)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당초	수정					
<b>총 계</b>	35,060	35,060	-	35,060	39,253	100	
<b>고유목적사업</b>	6,783	7,783	-	7,783	6,975	100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3,200	3,200	-	3,200	2,726	-	
녹색기술인력 양성 사업	200	200	-	200	196	-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운영	260	260	-	260	137	100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500	500	-	500	499	-	
서울햇빛지도 홈페이지 운영	22	22	-	22	19	-	
학교태양광발전소 확대 설치운영	735	735	-	735	735	-	
목재펠릿 보급확대	33	33	-	33	31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485	485	-	485	470	-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438	438	-	438	417	-	
주택용 발전보일러보급시범사업	400	400	-	400	332	-	
청사조명 LED교체 ESCO사업	510	510	-	510	413	-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실천사업	-	200	-	200	200	-	
폐비닐 전용봉투제 시범운영	-	800	-	800	800	-	
<b>용자사업</b>	18,000	18,000	-	18,000	14,534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용자지원	15,000	15,000	-	15,000	12,975	-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지원	1,000	1,000	-	1,000	653	-	
태양광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자지원	2,000	2,000	-	2,000	906	-	
<b>여유자금 예치</b>	6,773	5,773	-	5,773	14,240	-	
<b>여유자금 예탁</b>	3,500	3,500	-	3,500	3,500	-	
<b>기타(기본경비)</b>	4	4	-	4	4	-	

##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본 계정은 1996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조례」에 의하여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나, 2013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계정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주민지원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305억 8천2백만원에서 2015년도는 조성액 224억 4천5백만원, 사용액 193억 4천8백만원으로 30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조성액은 336억 7천8백만원임.

### 1.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30,582	3,096	22,445	19,349	33,678

※ 2015년도말 조성액=시금고 예치금(11,618백만원)+시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22,060백만원)

### 2. 2015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입금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용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85	30,882	21,774	2,600	5,837	671	-	30,967	19,349	-	-	11,618	-

## 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본 계정은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장기적 운영을 위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지원을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재원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출연금<sup>5)</sup>만으로 이루어져 있음.
- 환경개선계정은 전년도말 조성액 100억원에서 2015년도는 조성액 40억 9천7백만원, 사용액 140억원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9천 7백만원임.

### 1. 조성 총괄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2015년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10,000	△9,903	4,097	14,000	97

### 2. 2015년도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계	전입금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용자성 사업비	용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10,000	4,097	4,000	-	-	97	-	14,097	14,000	-	-	97	-

5) 경인운하 부지편입 보상금, 기타 보상금을 세입조치하여, 이를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Ⅷ. 검토의견

### 가.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 p. 8, p.31~42)

-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1,476억 8백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916억 4천9백만원, 실제수납액은 1,865억 7백만원, 미수납액 51억 4천2백만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표 1〉 회계연도별 세입예산 대비 5년간 실제수납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금액(B)	비율(B/A,%)
2015년도	147,608	191,649	186,507	5,142	2.7
2014년도	142,024	145,181	140,599	4,582	3.2
2013년도	183,556	193,778	188,755	5,023	2.6
2012년도	134,113	162,042	157,246	4,796	3.0
2011년도	240,255	185,604	180,765	4,839	2.6

-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전년도(1,405억 9천9백만원)에 비해 32.7% 증가한 1,865억 7백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외수입이 증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세외수입의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 고속도로 건설사업 편입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대한 보상금(413억 3천5백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한 것으로,

보상금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6)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통해 인천시로 이전할 예정임.

- 세외수입 미수납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양천구청 폐기물반입료 체납액 39억 5천3백만원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구리석유비축기지 부지 임대료 6억 9천4백만원임<sup>7)</sup>.

양천구청에서는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원씩 납부하기로 한 바 있어 미수납액은 줄어든 것으로 전망<sup>8)</sup>됨.

## 나.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p.51, p.79~119)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15년도 예산액 2,568억 7천7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193억 4천1백만원을 합하여 총 2,762억 1천8백만원임.
- 예산집행은 2,525억 9천5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239억 7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315억 9천6백만원(명사이월 29억 3천만원+사고이월 286억 6천6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6억 4천5백만원임.
- 세출예산의 큰 특징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8조<sup>9)</sup>에 따라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일이 당해연도 12월 31로 앞당겨진 것이 큰 원인이라 할 수 있음.

6)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2015.6.28.)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1. ~ 5. 매립면허권 양도, 매립지공사 이관

6.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및 제2외곽순환도로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을 인천시로 이전한다.

7) 구리석유비축기지 임대료는 2015년 12월에 부과하여, 납부기한이 2016년 1월로 되어 있어, 2015년도 회계에서는 미수납으로 처리되어 출납폐쇄단축을 고려하여 조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8)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이전인 2006년 3월~12월까지 양천구청이 납부하지 않은 폐기물반입수수료 및 공사분담금체납금액은 총 45억 5천3백만원으로 2014년부터 매년 3억원씩 납부하고 있음

9)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조(출납정리기한) 지출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경비의 정산 지출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나 출납원의 매 회계연도소속 세입금·세출금의 수납 또는 지급은 법 제8조에 따른 출납폐쇄기한 내에 하여야 한다.

□ 예산전용(※결산서 p.129)

- 예산의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에 변동된 여건에 신속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 정책사업내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 4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15회계연도 전용은 총6건, 4억 2천5백만원으로 동일부문사업 내에서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등을 특정업무경비, 기타보상금, 민간 행사사업보조 등으로 전용하였음.

〈표 2〉 2015회계연도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전용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6건			1,719	△425	425	1,719
환경보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46	△1		645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204-03 특정업무경비	106		1	107
환경보호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84	△100		84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307-04 민간행사보조	-		100	100
대기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5	△5		10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301-11 기타보상금	239		5	244
대기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207-02 전산개발비	119	△119		-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301-11 기타보상금	120		119	239
대기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164	△100		64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307-04 민간행사보조	-		100	100
폐기물	도시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201-01 사무관리비	126	△100		26
	도시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307-04 민간행사보조	-		100	100

- 「승용차마일리지제 시범사업」 사업은 시범사업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 확보한 인센티브 예산으로는 지급하기 어려워 사무관리비 일부와 전산개발비 전액(1억 1천9백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한 것임.
- 본 사업은 2016년도 예산으로 1억 3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승용차마일리지제 운영관리를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임.
- 「원전하나줄이기 이행 및 위원회 운영」,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도시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사업은 모두 사무관리비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용하였음.
- 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부족분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편성된 예산을 모두 전용하거나, 민간행사사업보조와 같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행사로 전용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임.

#### □ 예산변경 (※결산서, p.133)

-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한 단위사업내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2015년도 변경사용은 총1건, 22억 3천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사업명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표 3〉 2015회계연도 변경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액	변경금액		예산 현액
				감액	증액	
총 1건			2,230	△2,230	2,230	2,230
환경보호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발광형 LED 도로안전표지판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2,230	△2,230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			2,230	2,230

###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3건, 29억 3천만원으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보급」,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도입(강남)」,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사업의 시설비를 명시이월하면서 지난해 제264회 정례회에서 의회의 사전승인<sup>10)</sup>을 받은 바 있음.(※결산서 p.143)
-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강남자원회수시설)」은 예산현액 19억원 중 1천 9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계약체결)하였으나 지출하지 않고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성 및 타당성 검토가 미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현장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총15건에 286억 6천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0.4%)으로 전년도 총13건, 84억 7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3.3%)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음.(※결산서 p.147)

10) 2016년도 예산서 p.8, 「예산총칙」 제5조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와 같다.

〈표 4〉 최근 5년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예산현액	276,218	265,604	272,105	244,392	273,878
사고이월액	28,665	8,472	4,188	4,436	4,497
비율(%)	10.4	3.2	1.5	1.8	1.6

〈표 5〉 서울재사용 플라자 조성 예산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도	4,850	10,947	15,797	14,962	6,433	830	8,529	5
2014년도	11,201	4,430	15,631	4,537	1,364	10,870	77	3,320
2013년도	5,000	-	5,000	1,687	567	3,310	1,120	3

-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은 예산현액 157억 9천7백만원 중 64억 3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8억 3천만원은 명시이월, 85억 2천9백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5백만원은 불용처리하였음.(※결산서 p.84)
  - 본 사업은 설계기간 중 수요자의 의견청취, 디자인 변경, 토양오염물질 발견 등으로 설계기간이 연장되고, 공사 연기 등으로 인해 예산현액 중 일부 금액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을 3년 연속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였는데,
  - 이는 사전사업검토 및 집행계획에서의 실행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치밀한 사업검토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6〉 그린카 보급사업 예산집행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도	15,272	2,210 -	17,482	15,042	5,055	-	9,988	2,439
2014년도	6,640	- △90	6,549	6,470	4,259	-	2,210	80
2013년도	7,528	11 -	7,540	7,151	7,151	-		389

〈표 7〉 그린카 충전인프라 예산집행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도	5,230	1,318 -	6,548	5,298	2,226	-	3,072	1,250
2014년도	2,385	1,396 90	3,871	3,725	2,381	-	1,318	172
2013년도	4,145	- -	4,145	3,666	2,270		1,396	480

- 「그린카 보급사업」 과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 승용차 민간공모사업의 경우 당초 보급목표가 510대였으나 실제 보급은 235대로 목표대비 46.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2015년 전기차 보급실적

(단위 : 대)

계	공 공 부 문		민 간 부 문				
	서울시	자치구	카셰어링	G밸리	대여사업	민간보급	전기택시
369	10	16	11	30	16	235	51

- 전기차 민간공모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1회 충전시 짧은 주행거리, 급속 충전인프라 부족, 완속충전기 설치<sup>11)</sup>의 어려움, 구매보조금 축소<sup>12)</sup> 등

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표 9〉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목표 및 보조금 제도 현황(최근 3년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목표대수	105대			510대			510대			
보조금	구분	보급 대수	보조금	구분	보급 대수	보조금	구분	보급 대수	보조금	
	1분야	15	2,000만원	1분야	50	1,800만원	1분야	60	1,800만원	
	2분야	40		<b>2분야</b>	<b>330</b>	<b>1,650만원</b>	2분야	330	<b>1,650만원</b>	
	3분야	50		3분야	120	1,500만원	3분야	120	1,200만원	
				4분야	10	2,000만원				
완속충전기 보조금	700만원(국비)			600만원(국비)			400만원(국비)			
대상	1분야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2014년과 동일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비영리법인·단체		
	2분야	일반시민			일반시민			일반시민		
	3분야	법인·단체·기업			2014년과 동일			기업(영리기업)		
	4분야	-			비영리법인·단체			-		

## □ 집행잔액

-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은 총 206억 4천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7.5%)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117억 9천5백만원(예산현액 대비 4.4%)에 비해 증가하였음.

〈표 10〉 최근 5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예산현액	276,218	265,604	272,105	244,392	273,878
집행잔액	20,645	11,795	12,554	20,715	25,295
불용률(%)	7.5	4.4	4.6	8.5	9.2

11) 공동주택의 경우 완속충전기 설치시 입주자대표자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12) 2015년도의 경우 일반시민의 경우 전기승용차 구매시 구매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 350만원,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이 100만원 줄어들었으나 전기차량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음

〈표 11〉 사고이월사업 중 2015회계연도 집행잔액 10% 이상 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통계목	지난연도 사고이월액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그린카 보급	민간자본보조	2,200	16,451	2,364	14.4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보조	1,318	5,763	952	16.5
<b>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마포)</b>	<b>시설비</b>	<b>652</b>	<b>3,566</b>	<b>2,914</b>	<b>81.7</b>
도시형 음식폐기물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시범사업	시설비	145	145	26	17.9

〈표 12〉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343	130	-	213	62.1
<b>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성능개선(마포)</b>	<b>3,752</b>	<b>652</b>	<b>-</b>	<b>3,100</b>	<b>82.6</b>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488	226	-	261	53.5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자원화시설 확충 (서남)	177	74	-	103	57.6
반환금 및 기타	261	24	-	237	90.8

〈표 13〉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5년도	3,100	652	3,752	652	652		-	3,100
2014년도	1,427		1,427	671	19		652	756

-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사업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소각처리량<sup>13)</sup>을 늘리기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13) 2014년 서울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3,198톤 중 2,263톤은 소각처리하고 926톤은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감량화 및 서울시 자체소각용량을 150톤/일 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100톤/일의 소각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총사업비는 388억원으로, 2015년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6억 5천2백만원만을 집행하고, 예산액 31억원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 자체 소각처리량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지만,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15년) 미경과로 인한 국비지원불가와 효과 대비 과다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취소한 것임.
-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자원화시설 확충」사업은 서남물재생센터내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천7백만원 중 7천4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3,181톤/일)의 37% 만이 공공시설에서, 나머지 63%는 민간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 마포자원회수시설 성능개선 사업과 본 사업 모두 예산 집행단계에서 사업자체가 보류 또는 취소된 것으로 기존에 투입된 예산은 낭비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14〉 5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860	5,187	-	673	11.5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8,551	5,055	2,611	885	10.3
그린카 보급	17,482	5,055	9,988	2,439	14.0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6,548	2,226	3,072	1,250	19.1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비율(%)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35,408	33,652	-	1,756	5.0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양천,노원,강남,마포)	61,915	57,100	-	4,815	7.8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5,316	4,628	-	687	12.9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성능개선(마포)	3,752	652	-	3,100	82.6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23,678	21,773	-	1,905	8.0

## 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산현액은 2,634억원으로 이중 2,335억 4천7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250억 9천7백만원을 실제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4억 4천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sup>14)</sup>하였음. (\*결산서 45-46)

〈표 15〉 특별회계 세입예산 5년간 실제수납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금액(B)	비율 (B/A,%)	
2015년도	263,400	263,400	233,547	225,097	85.5	8,449
2014년도	246,800	246,800	212,451	212,253	86.0	198
2013년도	269,300	269,300	222,486	222,370	82.6	116
2012년도	241,900	263,545	222,928	222,720	84.5	208
2011년도	257,000	257,000	209,523	209,384	81.5	139

14) 미수납액은 2015년 12월에 부과한 열요금으로 납기일이 2016년 1월까지로 되어 있어 2015회계연도에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6〉 2015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통계목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
계	263,400	233,547	225,097	8,449	-	8,449
기타사용료	203,489	133,130	125,109	8,021		8,021
사업장생산수입	39,184	22,912	22,912	-		
분담금수입	6,691	9,978	9,589	389		389
그외수입	700	3,853	3,853			
지난연도수입	154	198	158	39		39
순세계잉여금	-	1,695	1,695	-		
예수금수입	13,181	61,781	61,781	-		

-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2,634억원) 대비 85.5%인 2,250억 9천 7백만원으로 이는 외기온도 상승에 따른 열판매량(기타사용료)이 감소<sup>15)</sup> 하였고, SMP(계통한계가격)가 8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사업장생산수입(전기판매수입)이 줄어든 것에 기인함.
- **예수금 수입**은 617억 8천1백만원으로 당초에는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131억 8천1백만원을 차입하기로 하였으나, 486억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증가한 것임.
  - 그러나 결산결과 불용액이 485억 4천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sup>16)</sup>이 104억원에 이르고 있어 과도한 금액을 차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5) 2015년도의 경우 12월 평년보다 2℃가량 외기온도가 올라가면서 열판매량이 감소하였음

16)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까지의 수납액(지방재정법시행령 제4조)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지출액(지방재정법 제8조)을 말하는 것이다.



- 세출현액은 2,634억원으로 예산집행은 2,145억 8천2백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146억 7천3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634억원의 18.4%인 485억 4천8백만원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운영」이 299억 7천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17〉 5억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사 고이월)	집행잔액	
				금액	비율(%)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	226,981	196,832	179	29,970	13.2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	10,655	7,760	-	2,895	27.2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19,587	8,094	-	11,493	58.7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공급 확대	1,775	960	-	815	45.9
예비비	3,194	-	-	3,194	100.0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은 예산현액의 13.2%인 299억 7천만원,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58.7%인 114억 9천3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은 외기온도 상승으로 인해 지역난방 열판 매량이 감소하여 열생산에 필요한 LNG구입량이 줄어들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라. 기금

### □ 기후변화기금

-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자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위해 설치비의 80%이내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연리 1.75%의 조건으로 용자해주는 것으로 예산은 20억원 편성하였으나 9억 6백만원을 집행(집행률 45.3%)하고 나머지 10억 9천4백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결산서 p.153~167)

〈표 18〉 태양광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자지원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A)	지출액	불용액	
	당초	수정			금액(B)	비율 (B/A,%)
2015년도	2,000	2,000	2,000	906	1,094	54.7
2014년도	2,000	2,000	2,000	1,467	533	26.7
2013년도	6,300	6,300	6,300	1,078	5,222	82.9

〈표 19〉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용자조건(2015년)

용자한도액		대출금리	용자조건
발전시설 설치비의 80%이내	최대 150백만원	연리 1.75%	8년 분할상환 (3년 거치시 5년 분할상환)

- 본 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가격인 ‘계통 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 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 REC)’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sup>17)</sup> 함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하락되면서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의 신규설치가

17)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REC를 대규모 사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 가격은 2012년 이후 하락하고 있음

저조<sup>18)</sup>하였기 때문임.

-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용 부지 대부요율 인하(25,000원/kW·년 → 20,000원/kW·년), 서울형 발전지원제도 개선<sup>19)</sup>, 용자제도 개선 등을 도입하여 민간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나, 시장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당분간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표 20〉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부지 대부요율(2015년)

설비용량	100kW 초과시	100kW 이하시
대부요율	25,000원/kW·년	20,000원/kW·년

〈표 21〉 계통한계가격(SMP)의 가격 변동 추이

(단위 : 원/kW)

구분	평균	월 별 가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년도	152	152	151	152	163	151	158	155	154	137	156	145	150
2014년도	142	143	154	163	151	145	136	143	129	131	132	133	144
2015년도	<b>101</b>	140	119	118	103	96	84	81	88	91	98	94	95

〈표 22〉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현물시장가격변동 추이

(단위 : 원/kW)

구분	평균	월 별 가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3년도	176	158	161	156	159	156	159	159	165	186	220	220	208
2014년도	110	196	167	-	129	116	117	116	108	98	92	90	89
2015년도	91	88	90	88	93	89	90	93	92	91	91	93	96

18) 2013년 48개소 → 2014년 41개소 → 2015년 27개소로 감소추세임

19) 소형태양광발전시설(100kW/h)의 경우 보조금을 50원/kW → 100원/kW 로 인상하였음

- 「기후변화대응 서울의 약속 실천」 사업은 2015. 4. 8~12에 개최된 이클레이(ICLEI)서울총회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서울의 약속」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폐비닐 전용봉투제 시범운영」 사업은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다량 혼입되어 배출되는 폐비닐을 최대한 분리배출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생활쓰레기를 대폭 감량하고자 폐비닐 별도배출제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사업의 경우 2014년도에는 민간업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폐비닐 전용봉투를 무상제공하였으나, 2015년도부터 이를 확대시행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임.
- 두 사업 모두 기금운용계획 변경(2015. 3.12)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였는데, 사업의 성격상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당초 일반회계나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편성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이 쉬운 본 기금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사업추진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사용내역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관리비/임대비/편익시설이용료) 지원 등 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결산서 p. 171~179)

〈표 23〉 2015회계연도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		지난연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비 고
	당초	수정				
난방비 지원(양천,강남,노원)	8,067	8,067		8,067	7,659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434	317		317	293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노원)	6,887	4,800	85	4,885	4,472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관리비/임대비/편의시설이용료 등)	9,475	9,475		9,475	6,739	
여유자금예치(우리은행)	7,857	9,296		9,296	11,618	

###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장기적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4자협의체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간의 최종합의가 2015년 6월 28일에 이루어져, 조성된 금액을 전액 이전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

(※결산서 p. 183~187)

#### ①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2015.6.28.)

<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

- 1. ~ 5. 매립면허권 양도, 매립지공사 이관
- 6. 서울시는 경인아라뱃길 및 제2외곽순환도로 등 수도권매립지 편입부지 매각대금을 인천시로 이전한다.

#### ②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후속조치 세부이행계획 (2015. 10. 30.)

< 부지매각대금 이전 >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일부(200 억원) 및 제2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매각대금 전액(약 413억원) 등 총 613억원을 '16년에 이전
-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매각대금 잔액은 **2018년까지 이전 완료**

(단위 : 억원)

합계	기 지원	' 15년	' 16년	' 17년 ~ ' 18년
1,025	200	140	200	485

\* 서울시는 서울·인천 공동협력 합의문('13.10.14)의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매각대금을 조기에 이전하도록 적극 노력

## □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 환경정책과 ]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6,084	34,820	773	490
1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	1,610	1,573	-	37
2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사업	931	414	500	18
3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	7,993	7,447	273	273
4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도로안전표지판	2,230	2,230	-	-
5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278	249	-	29
6	「서울의제21」 실천	1,400	1,376	-	24
7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60	54	-	6
8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51	51	-	-
9	에너지절약 및 생산확대 정책홍보	496	490	-	6
10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392	392	-	-
11	서울특별시 환경상 시상	24	24	-	-
12	서울그린페스티벌(환경영화제) 지원	303	303	-	-
13	환경작품공모전 시상	57	57	-	1
14	국제 에너지컨퍼런스 개최	318	316	-	2
15	원전하나줄이기(에너지정책) 이행 및 위원회 운영	207	205	-	2
16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185	185	-	-
17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171	155	-	16
18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72	69	-	3
19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672	657	-	15
20	별자리 관찰 및 절약교육을 통한 시민주도 절전소 운영(주민참여)	95	95	-	-
21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8,153	18,153	-	-
22	기본경비	351	294	-	57
23	반환금및기타	35	35	-	-

[ 녹색에너지과 ]

①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6,347	5,400	395	553
1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2,335	1,974	200	161
2	태양광 발전시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구축	97	83	-	14
3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전 검토체계 구축	40	39	-	1
4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40	38	-	2
5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167	163	-	4
6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800	677	-	123
7	개운산공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주민참여)	130	130	-	-
8	장위빛물펌프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주민참여)	120	120	-	-
9	햇빛으로 밝은 도서관 만들기(주민참여)	130	130	-	-
1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319	319	-	-
11	서울형GT육성을위한R&D지원	634	282	195	157
12	녹색산업지원센터 운영	1,200	1,113	-	87
13	기본경비	53	50	-	3
14	반환금 및 기타	283	283	-	-

②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63,400	214,673	179	48,548
1	집단에너지공급사업운영(특)	226,981	196,832	179	29,970
2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긴급복구(특)	750	665	-	85
3	열원시설 및 열수송관 보수공사(특)	10,656	7,760	-	2,895
4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특)	19,587	8,094	-	11,493
5	목동(강서)지구 지역냉·난방공급 확대(특)	1,775	960	-	815
6	예비비(특)	3,194	-	-	3,194
7	반환금및기타(집단에너지 특별회계)	300	259	-	41
8	융자기금상환	158	104	-	54

[ 기후변화대응과 ]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4,075	12,815	-	1,261
1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180	180	-	-
2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5,860	5,187	-	673
3	승용차요일제 확산 및 무선인식시스템 유지관리	284	271	-	13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권 거래제) 추진	130	124	-	6
5	승용차 이용억제 교통문화 확산	200	197	-	3
6	기후변화 인식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홍보	67	67	-	-
7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117	111	-	6
8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500	500	-	-
9	2015년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 개최 추진	2,475	2,322	-	153
10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범사업	303	290	-	13
11	해외도시 환경 컨설팅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400	369	-	31
12	지속가능 공공구매 네트워크 구성	100	100	-	-
13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526	475	-	51
14	석면관리 사업	278	247	-	31
15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493	493	-	-
16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25	88	-	37
17	학교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제거	1,720	1,720	-	-
18	기본경비	56	49	-	6
19	반환금 및 기타	261	24	-	237



[ 대기관리과 ]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78,983	55,953	16,118	6,912
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8,551	5,055	2,611	885
2	상암수소스테이션 운영	203	202	-	1
3	그린카 보급	17,482	5,055	9,988	2,439
4	그린카 충전인프라 구축	6,548	2,226	3,072	1,250
5	전기이륜차 보급	293	272	-	21
6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35,408	33,652	-	1,755
7	친환경운전장치 부착	343	130	-	213
8	친환경 경제운전 문화 확산	150	137	-	13
9	친환경기동반 운영	153	95	-	58
10	저공해자동차 등록시스템 개선 및 표지 발급	58	57	-	-
11	저녹스버너 보급	3,919	3,919	-	-
12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240	240	-	-
13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1,873	1,850	-	23
14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197	129	-	68
15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방안 연구	700	136	448	116
16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운영	82	78	-	4
17	기본경비	82	67	-	15
18	반환금및기타	2,703	2,653	-	50

[ 자원순환과 ]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27,759	102,920	13,902	10,938
1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원,강남,마포)	61,915	57,100	-	4,815
2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5,316	4,628	-	687
3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20	304	-	16
4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134	123	-	12
5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증축	6,780	4,127	2,623	29
6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성능개선(마포)	3,752	652	-	3,100
7	주민편익시설 시설개선(강남)	311	311	-	-
8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도입(강남)	1,900	-	1,900	-
9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운영	488	226	-	261
10	뚝섬나눔장터 운영	274	206	-	68
11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252	232	-	21
12	리사이클 아트 페스티벌	135	133	-	2
13	재활용률 향상	309	282	19	8
14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	2,000	2,000	-	-
15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15,797	6,433	9,359	5
16	재활용센터 활성화	27	24	-	3
17	청량리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분리수거함 설치 (주민참여)	5	5	-	-
18	구로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지원	300	300	-	-
19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10	10	-	-
20	자원회수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출연	23,678	21,774	-	1,905
21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지원기금 출연	4,000	4,000	-	-
22	기본경비	56	50	-	6

[ 생활환경과 ]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8,772	7,920	408	444
1	도로분진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1,316	1,316	-	-
2	서울클린데이 운영	61	60	-	1
3	청소차량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157	134	-	22
4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900	882	-	18
5	음식폐기물 원천 감량화 사업	225	223	-	1
6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사업	1,115	1,115	-	-
7	음폐수 처리 자치구(강서,성동)보조사업	540	403	-	137
8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확충(서남)	177	74	-	102
9	도시형 음식폐기물 자원화 집중처리장치 시범사업	145	120	-	26
10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음식물쓰레기 계량화 시스템구축 지원(주민참여)	88	88	-	-
11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651	611	-	40
12	주민 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64	60	-	3
13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1,048	1,044	-	4
14	서울시 쓰레기 적환장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146	146	-	-
15	스마트형 공공쓰레기통 개발 및 보급사업	50	50	-	-
16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	60	52	-	8
17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200	199	-	1
18	보라매공원 광역 적환장 타당성 조사	100	43	43	14
1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532	532	-	-
20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74	71	-	4
21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35	35	-	1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22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479	479	-	-
23	생활소음 줄이기 시민운동 전개 및 교육홍보 사업	60	58	-	2
24	노출인구 분석을 통한 교통소음 저감사업	500	81	365	54
25	기본경비	42	39	-	3
26	반환금 및 기타	8	5	-	4

[ 에너지시민협력과 ]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345	1,306	-	38
1	원전하나줄이기 시민협력 지원	1,083	1,080	-	3
2	에너지를 아끼는 착한가게	206	172	-	34
3	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운영	42	41	-	1
4	기본경비	14	13	-	1

[ 차량정비센터 ]

(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2,853	2,844	-	-
1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2,379	2,376	-	3
2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207	203	-	4
3	기본경비	267	265	-	2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서 부족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의 수입을 앞당기어 이에 충당·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제55조(예산의 전용)** ①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11.9.6., 2012.2.29., 2014.3.5.>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같은 규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율범위 중 인건비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p.268)

### ○ 예비비 사용의 제한

- 내재적 제한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②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③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 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 실정법상 제약 : 보조금, 업무추진비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집행이 가능.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등)**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설 2015.7.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

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 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1. 수입

가. 수입계획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불납결손액

마. 미수납액

### 2. 지출

가. 지출계획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지출계획현액

라. 지출액

마. 다음 연도 이월액

바. 불용액

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기금 정비실적의 분석기준

2. 기금 운용 건전성의 분석기준

3. 기금 운용 효율성의 분석기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석기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